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면서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5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결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및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양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해양정책관·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0호부터 제38호까지, 제6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으로 하며,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4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

제5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6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만지역 내 물류의 개선(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항만설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6항제6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9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관리

제22조제1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관리

제23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관리

제41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2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를 “3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부터 제3항 단서까지, 제7항 단서 및 제8항 단서 중 “5

퍼센트”를 각각 “7퍼센트”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2020년 9월 1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9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4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3”을 “10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25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3”을 “10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1. 제46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2. 삭제 <2020. 3. 31.>

3. 제46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

4. 제46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5. 제46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6. 제46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

7. 제46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해양수산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 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 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 으로 한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 으로 한다.
<신 설>	③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및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② ~ ⑥ (생략)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

⑦ (생략)	항까지와 같음)
⑧ (생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 · 미래전략팀장 · 창조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7조(해양정책실) ① (생략)	<삭 제>
② 해양정책관 · 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 으로 한다.	제7조(해양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양정책관 · 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해양정책관 · 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 으로 한다.
<신 설>	③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

	<u>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u><신 설></u>	<u>⑤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0호부터 제38호까지, 제6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u>③ ~ ⑬ (생 략)</u>	<u>⑥ ~ ⑬ (현행 제3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u>
<u>⑰ 해양정책관은 해양정책과장·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장·해양개발과장 및 해양레저관광과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u><삭 제></u>
<u>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정책과장·해양공간정책과장·해양보전과장·해양생태과장 및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u><삭 제></u>
<u>⑲ 국제협력정책관은 국제협력총괄과장·해양영도과장 및 통상무역협력과장의 소관사무에</u>	<u><삭 제></u>

<u>관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u>제8조(수산정책실) ① (생 략)</u>	<u>제8조(수산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u>
<u>②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으로 하며, 수산정책관·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u>③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u><신 설></u>	<u>④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4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u><신 설></u>	<u>⑤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u>

	<u>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③ ~ ⑮ (생 략)	⑥ ~ ⑮ (현행 제3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⑯ 수산정책관은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소득복지과장 및 원양산업과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수산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⑰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정책과장·수산자원정책과장·지도교섭과장 및 어선안전정책과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수산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⑱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양식정책과장·양식산업과장 및 어촌어항과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수산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제9조(해운물류국) ① ~ ⑤ (생 략)	제9조(해운물류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만지

	<u>역 내 물류의 개선(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항만설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항만국) ① ~ ⑤ (생 략)	제11조(항만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만연안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항만재개발 <u>사업계획 및 실시계획</u> 의 수립·승인	6. ----- <u>사업계획</u> -----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⑧ (생 략)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항만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항만재개발 관련 사업관리</u>	9. <u>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관리</u>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의 집행 및 사업관리
 9. ~ 15. (생략)
 ⑮ (생략)
 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 ① ~ ④ (생략)
 ⑤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항만재개발 관련 사업관리
 9. ~ 14. (생략)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관리
 9. ~ 15.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7. (현행과 같음)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사업관리
 9. ~ 14.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 3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으며, 별표 18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

관 1명,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 7퍼센트-----

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 ⑥ (생략)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3명

③ -----

-----.

-- 7퍼센트-----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7퍼센트-----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6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의2와 같다.

⑨ ~ ⑬ (생략)

제46조(한시정원) ①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9월 1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② 삭제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9월 30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

-----.

⑧ -----

---. -----

---- 7퍼센트-----

-----.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

----- 2022년 12월 31

일-----

-----.

③ -----

---- 2021년 12월 31일-----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등대관리서기보 · 운전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03</u>	<u>10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6</u>	<u>15</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등대관리서기보 · 운전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03</u>	<u>10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6</u>	<u>15</u>	-1
·	·	·	
·	·	·	